

성인의 성별 및 성별 식별 정보 변경 인정, 이름 변경 및 증명서 정정발급 신청 안내문

참고: 성별 변경 사항이 반영된 귀하 또는 귀하 자녀의 정정된 캘리포니아 출생증명서나, 성별 변경 사항이 반영된 정정된 캘리포니아 혼인허가서 및 혼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반드시 이 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 명령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보건안전법 제103426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캘리포니아 공중보건부의 주 등록관에게 직접 신청할 수도 있으며, 비공개 혼인허가서 및 혼인증명서의 경우, 해당 비공개 혼인허가서를 발급한 카운티의 카운티 서기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페이지의 연락처 정보 참조.)

1. 신청 방법

성별 및 성별 식별 정보 변경 인정 신청은 단독으로 제기하든 또는 이름 변경, 신청인의 출생증명서 정정발급, 신청인 자녀의 출생증명서 정정발급, 혼인허가서 및 혼인증명서 정정발급 신청과 함께 제기하든 관계없이 모두 양식 **NC-300**을 사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본 양식은 만 18세 이상인 사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양식 **NC-500**을 사용해야 합니다.)

2. 제출처

성별 및 성별 식별 정보 변경 인정 신청은 캘리포니아의 어느 카운티 상급법원에든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서에 신청인의 이름 변경 요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이 캘리포니아 거주자인 경우에는 신청인이 현재 거주하는 카운티의 상급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이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신청인 자녀의 출생증명서가 발급된 카운티 또는 신청인의 혼인이 성립된 카운티에 제출해야 합니다.

3. 필요한 양식

다음 각 서류의 원본과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 성인의 성별 및 성별 식별 정보 변경 인정, 이름 변경 및 증명서 정정발급 신청서(양식 **NC-300**)
- 성인의 성별 및 성별 식별 정보 변경 인정, 이름 변경 및 증명서 정정발급 신청 명령(양식 **NC-330**)
- 자녀의 출생증명서 정정발급 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자녀의 출생증명서—첨부서류(양식 **NC-311**)
- 혼인허가서 및 혼인증명서 정정발급 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혼인허가서 및 혼인증명서—첨부서류(양식 **NC-312**)와, 양식 **NC-312**에 상대 배우자가 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유소명명령—혼인허가서 및 혼인증명서 정정발급(양식 **NC-325**)
- 민사사건 표지(양식 **CM-010**)

지역 법원마다 추가 서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 양식이 필요한지 여부는 해당 법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법원 접수

민사사건 표지(양식 **CM-010**) 원본을 준비합니다. 작성한 신청서와 필요한 첨부서류, 민사사건 표지를 첨부한 명령안을 각 서류의 사본과 함께 법원 서기에게 제출하십시오. 접수 표시가 된 신청서 사본(서기가 날인)을 받아 두고, 필요한 경우 사유소명명령 발부를 요청하십시오.

수수료 면제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접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수수료 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 법원 비용 면제 신청(양식 **FW-001**) 및 상급 법원 수수료 및 비용 면제에 관한 정보 시트(양식 **FW-001-INFO**)를 참조하십시오.)

5. 배우자에 대한 송달

혼인허가서 및 혼인증명서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혼인허가서를 공유하는 배우자가 양식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또한 생존해 있으며 서명할 능력이 있는 경우), 법원이 발부한 사유소명명령—혼인허가서 및 혼인증명서 정정발급(양식 **NC-325**)과 신청서 사본을 법원이 해당 명령을 내린 날로부터 4주 내에 그 배우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직접 송달로 송달되어야 하며, 상대방이 다른 주(state)에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 413.10, 414.10, 또는 415.40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합니다. 송달은 귀하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하여야 하며, 귀하는 송달한 사람이 송달증명서를 작성하게 한 뒤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사유소명명령 송달 증명서 (양식 **NC-221/NC-321/NC-521**) 참조).



6. 정부기관에 대한 송달—구금 수감 중이거나 가석방 상태인 사람의 이름 변경

귀하가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 중이거나, 캘리포니아 교정재활부의 관할 하에 있는 경우(주립 교도소 수감 중이거나 가석방 상태인 경우)에는 이름 변경 신청서—양식 **NC-300**에 따른 신청서 포함—를 관련 정부기관에 송달해야 합니다.

-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는 신청서 사본을 카운티 보안관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주립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는 신청서 사본을 교도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가석방 상태인 경우에는 신청서 사본을 지역 가석방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송달 방법은 각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안관, 교도소장 또는 지역 가석방 관리자에게 사본을 제출한 후에는, 작성을 완료한 일반우편 송달 증명서—민사(양식 **POS-030**)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십시오.

양식 **NC-300**에서 신청인이 구치소 수감 중인지 또는 캘리포니아 교정재활부의 관할하에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진술은, 신청서 송달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에 한정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법원 심리

항목 5에 명시된, 서명하지 않은 배우자가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심리 기일이 지정됩니다. 심리가 열리는 경우 법원에서 귀하에게 통지를 발송합니다. 모든 문서의 사본을 심리에 가져오십시오. 사법관이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 사법관은 성인의 성별 및 성별 식별 정보 변경 인정, 이름 변경 및 증명서 정정발급 신청 명령(양식 **NC-330**)에 서명하게 됩니다. 기한 내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별도의 심리 없이 신청을 인용하고 명령서에 서명합니다.

8. 장애 관련 편의 제공 요청

귀하가 장애가 있고 법원 심리 참여를 위해 편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서(양식 **MC-410**)를 사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ADA 코디네이터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원에 대한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 방법(양식 **MC-410-INFO**)을 참조하십시오.

9. 출생증명서 정정발급

귀하 또는 귀하의 자녀가 캘리포니아에서 출생한 경우, 귀하의 성별 변경 사항이 반영된 귀하 또는 귀하 자녀의 정정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법원 명령서의 등본을 주 등록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주 등록관에게 아래 연락처 및 주소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

Vital Records - MS 5103

P.O. Box 997410

Sacramento, CA 95899-7410

전화: 916-445-2684

웹사이트: www.cdph.ca.gov

10. 혼인허가서 및 혼인증명서 정정발급

귀하가 캘리포니아에서 혼인한 경우, 귀하의 성별 변경 사항과 신부, 신랑, 해당 없음 표기 변경이 반영된 정정된 혼인허가서 및 혼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명령서의 등본을 제출하고 해당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기존 혼인허가서 및 혼인증명서가 비공개 기록인 경우, 해당 비공개 혼인허가서 및 혼인증명서를 발급한 카운티의 카운티 서기에게 제출하십시오. (비공개 혼인이란 배우자처럼 함께 생활해 온 두 명의 미혼 성인이 할 수 있는 혼인입니다. 비공개 혼인의 경우 증인이 결혼식에 참석하거나 혼인허가서에 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기존 혼인허가서 및 혼인증명서가 비공개 기록이 아닌 경우, 상기 항목 9에 연락처가 기재된 주 등록관에게 제출하십시오.

11. 셀프 헬프 가이드

자세한 정보는 성별 인정에 대한 캘리포니아 법원 셀프 헬프 가이드(selfhelp.courts.ca.gov/gender-recognition-order-index)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 법원마다 본 안내사항을 보완하는 추가 안내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가 제공되는지 여부는 해당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법원은 이러한 신청을 담당하는 부서, 심리가 필요한 경우 신청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는 시간, 그리고 영상 또는 전화를 통한 원격 출석 가능 여부 등에 관한 추가 서면 안내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